

제247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지진 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8 월 14 일

여 수 시 장

정기명



여수시 조례 제2228호

붙임 여수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여수시 관할구역 내의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를 “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를 위하여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를 “구성 및 운영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관할 구역 내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2. 관할 구역 외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지원

제2조제4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건축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

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기술사

나. 「건축사법」 제2조에 따른 건축사

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 분야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라. 그 밖에 여수시 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2. 건축물 외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

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 외 시설물 직무분야 (토목 등) 기술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외 시설물 관련 직무분야(토목 등)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다. 그 밖에 여수시 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⑧ 여수시 대책본부장은 관할 구역의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5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 ① 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 결정한 경우 신속한 위험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대상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위험도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피해상황 및 주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② 평가단장은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위험도 평가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피해 상황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평가단원은 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수립한 위험도 평가 계획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 할 경우 제2조제5항에서 발급받은 위험도 평가 단원증을 지참해야 한다.

④ 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현장조사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위험도 평가단에 알려야 한다.

1.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및 시설물 현황
2. 지역 및 시설물 피해 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치안 유지 상황 등 현지 상황
4. 그 밖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⑤ 그 외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지진·화산재해 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 []말소 신청서

※ []는 해당하는 곳에만 √ 표를 합니다.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주 소		
	소 속	직 위	
	연락처	팩스번호	이메일(E-mail)

신청사항	[]등록 []말소
	전문분야 ※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건축물 [] 교량·터널 [] 댐·저수지 [] 철도 [] 원자력시설 [] 항만 [] 가스·전력·통신 [] 기타()

「여수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항·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 []말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귀하

첨부 서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증

(앞쪽)

여수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증	
성 명	
소 속	
주 소	
위 사람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 및 「여수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임을 증명합니다.	
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직인	

(뒤쪽)

본 증을 분실하였거나 습득하신 분께서는 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 (☎ 061-659-494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등)</p> <p>① 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여수시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u>·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여수시 관할구역 내의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여수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한다.</u></p> <p><u><신 설></u></p> <p><u><신 설></u></p> <p>②·③ (생략)</p> <p>④ 위험도 평가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여수시 대책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 단원은 제5항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선정하며 특정 성별의 단원 수가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p> <p>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p>	<p>제2조(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등)</p> <p>① -----은 -----은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를 위하여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 ----- 구성 및 운영해야 한다.</p> <p>1. 관할 구역 내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p> <p>2. 관할 구역 외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지원</p> <p>②·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 ----- ----- -----</p> <p>1. 건축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p>

표 1에 따라 건축·토목·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고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건축사법」 제2조에 따른 건축사

평가단원의 요건

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기술사

나. 「건축사법」 제2조에 따른 건축사

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라. 그 밖에 여수시 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2. 건축물 외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

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 외 시설물 직무분야(토목 등) 기술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외 시설물 관련 직무분야(토목 등)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다. 그 밖에 여수시 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3.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토목·안전관리 직무
분야의 기술사

4. 여수시 소속 공무원 중 재난안전
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5. 여수시 대책본부장이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⑤ ~ ⑦ (생략)

<신설>

<신설>

<삭제>

<삭제>

<삭제>

⑤ ~ ⑦ (현행과 같음)

⑧ 여수시 대책본부장은 관할 구역의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5조(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 ①

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 결정한 경우 신속한
위험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대상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위험도 평가 계획을 수립
해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피해
상황 및 주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② 평가단장은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여수시 재난
안전대책본부장에게 위험도 평가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피해 상황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평가단원은 여수시 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이 수립한 위험도 평가 계획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 할 경우 제2조 제5항에서 발급받은 위험도 평가 단원증을 지참해야 한다.

④ 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현장 조사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 하여 위험도 평가단에 알려야 한다.

1.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및 시설물 현황

2. 지역 및 시설물 피해 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치안 유지 상황 등 현지 상황

4. 그 밖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⑤ 그 외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다.

제5조 ~ 제8조 (생략)

제6조 ~ 제9조 (현행 제5조부터 제8조까지와 같음)